

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

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			
회의소집일시	2023년 11월 14일(화) 17:00		
회의일시	2023년 11월 28일(화) 14:00		
재적의원	11명	참석의원	11명
회의장소	뉴밀레니엄관 13층 1305호		
회의안건	가. 학칙 개정(안) 심의		
회의내용			

1. 안건

가. 학칙 개정(안) 심의

2. 주요 내용

가. 학칙 개정(안) 심의 : 세부사항 [붙임1] 참조

1) 국내외 공동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- 학기당취득학점(제32조) : 학기당 취득학점 예외 인정
- 학위증(제34조) : 협정 등에서 정한 별도 서식의 학위증 수여 가능
- 학점인정(제45조) :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정 등에 따라 인정

2) 타과생의 건축학과 부/복수전공 이수 제한

3. 위 안건에 관한 심의 결과

가. 학칙 개정(안) 심의

• 심의 결과에 대한 의원별 동의 가부

의장	이종익	可 / 不	의원	이일천	可 / 不	의원	신찬희	可 / 不
부의장	류성경	可 / 不	의원	이수빈	可 / 不	의원	박이봉	可 / 不
의원	김수화	可 / 不	의원	정승홍	可 / 不	의원	장혜미	可 / 不
의원	정주연	可 / 不	의원	이정배	可 / 不			

• 최종심의 결과

※ 회의는 재적 평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함.

※ 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.

가. 학칙 개정(안) 심의

재적 의원	참석의원	可	不	최종 승인여부
11명	11명	11명	0명	可 / 不

간서명 대표	의장	이종익	의원	이일천	의원	장혜미
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

[붙임1]

학칙 개정(안)

(1) 규정 개정 사유

-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 운영에 따른 학기당 취득학점 예외 인정
- 공동학위증에 대해 별도서식 학위증 수여
- 타과생의 건축학과 부/복수전공 이수 제한
- 공동학위과정생의 타 대학 학점 인정 범위 확대

(2) 규정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<p><u>제32조(학기당취득학점)</u> ① 매 학기 최대취득 학점은 1학년 18학점 그 외에는 19학점으로 한다. 단, <u>국외 타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, 학·석사연계과정, 8학기 졸업학점이 140이상인 학과(전공)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21학점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과의 협정에 따른다.</u></p>	<p><u>제32조(학기당취득학점)</u> ① 매 학기 최대취득 학점은 1학년 18학점 그 외에는 19학점으로 한다. 단, <u>국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, 학·석사연계과정, 8학기 졸업학점이 140이상인 학과(전공)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21학점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)</p> <p>③ <u>국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생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 및 소속대학과의 협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	자구수정
<p><u>제34조(졸업.학위.학위취소)</u> ① - ② (생략)</p> <p>③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,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, (별지서식 1)에 의하여 (별표 2)의 학위를 수여한다. 단,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서(별지서식 2)를 수여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<u>제34조(졸업.학위.학위취소)</u> ① - ④ (현행)</p> <p>..</p> <p>⑤ <u>국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에 따른 공동학위는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 등에 따라 (별지서식 1) 외 협정 등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</u></p>	항 신설
<p><u>제36조(부전공)</u> ① - ③ (생략)</p> <p>④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는 타 학부(과) 및 전공 학생의 부전공 이수를 제한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<u>제36조(부전공)</u> ① - ③ (현행)</p> <p>④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및 건축학과는 타 학부(과) 및 전공 학생의 부전공 이수를 제한한다.</p> <p>⑤ (현행)</p>	자구추가
<p><u>제37조(복수전공)</u> ① - ② (생략)</p> <p>③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는 타 학부(과) 및 전공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를 제한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<u>제37조(복수전공)</u> ① - ② (현행)</p> <p>③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및 건축학과는 타 학부(과) 및 전공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를 제한한다.</p> <p>④ (현행)</p>	자구추가

간서명 대표	의장		의원		의원	
-----------	----	--	----	--	----	--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45조(학점인정) ① 재학생이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입학 전에 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(K-MOOC 등 교내외 온라인 강좌 플랫폼에 등재된 교과목 포함)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입학 후 1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.</p> <p>③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방송,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 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, 학점 인정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,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.</p> <p>④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최대 3학점 까지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⑤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산업체 등의 경력, 창업 등의 학습경험에 대해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 <p>⑥ 재학 중 K-MOOC 강좌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6학점까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⑦ 본조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편입생은 재학 중 15학점을 초과할 수 <u>없고</u>, 외국 대학 및 첨단분야 국내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간 협약으로 정한다.</p>	<p>제45조(학점인정) ① - ⑥ (현행)</p>	자구수정

(3) 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간서명 대표	의장	이승우	의원	김병호	의원	장혜미
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

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

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						
회의소집일시	2023년 11월 14일(화) 17:00					
회의일시	2023년 11월 28일(화) 14:00					
재적의원	11명	참석의원	11명			
회의장소	뉴밀레니엄관 13층 1305호					
회의안건	가. 학칙 개정(안) 심의					
참석자 명부						
순번	구분	성명	서명(인)	비고		
1	의장	이종의	이종의	교수		
2	부의장	류성경	류성경	교수		
3	의원	김수화	김수화	교수		
4	의원	정주연	정주연	교수		
5	의원	이일천	이일천	직원		
6	의원	이수빈	이수빈	직원		
7	의원	정승홍	정승홍	직원		
8	의원	이정배	이정배	학생		
9	의원	신찬휘	신찬휘	학생		
10	의원	박이봉	박이봉	학외		
11	의원	장혜미	장혜미	조교		
12	간사	남수정	남수정			